

— 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(2002. 6.19공포)이 개정되고
- 환경사업소 위탁운영을 위한 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중 관련 사항을 개정.

3. 주요내용

- 환경사업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이사중 상임이사를 추가(제9조)
-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요건, 위원회의 위원자격요건, 운영방법, 이사장 추천방법을 개정(제19조 내지 제23조)
- 예산공통지침 위배 시 시정 명령(제29조)
- 매 사업연도 결산을 3월 이내에서 2월 이내로 함.(제31조)

4. 참고사항

- 지방공사·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표준(안)
- 지방공기업법 제58조(임원)
-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 2, 3(사장후보추천위원회)

5. 검토의견

- 지난 제68회 임시회 시 환경사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(2002. 4.6) 심사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동의한 바 있으며

- 기존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환경사업소 업무가 추가됨으로 효율적 관리를 위해 행정자치부 지방공단 인력관리 기준 지침에 의거 상임이사를 신설코자 하는 내용과
- 지방공기업법(2002. 3.25), 지방공기업법 시행령(2002. 6.19)의 개정으로 관련 내용을 조례에 보완코자 하는 내용임.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타 조례나 상위법에 저촉사항 없음.